

장애인복지부문의 성과와 추진방향

Welfare for Disabled People: Progress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

尹相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정부는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교육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조정하고자 1996년 8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에 소집된 제1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발표되어 온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등을 기본으로 복지·교육·고용부문 등을 연계시킨 중·장기종합 계획으로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 각 계의 장애인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실무작업단이 결성되어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연구 및 토론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동년 12월 9일에 개최된 제2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상정되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이라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각 부처는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계획안에 명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복지, 교육, 고용 3개 부문의 발전 계획 중 복지부문에 있어서 지난 4년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을 통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부문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복지 부문의 주요 목표들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 장애범주 확대의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주요 목표들은 각기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발생 예방은 모자보건 강화, 산모·태아 및 신생아 관리체계 확립,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제도화, 학교보건 강화, 성인병·노인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체계의 개선,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등의 하위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하위목표로는 우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및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의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자립자금 용자 대상의 확대,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및 급여내용의 보완, 종합적 재활지원체계 수립 등이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크게 사회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와 사회인식 개선 등의 기타 사회참여 확대 추진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는 보행환경(보도) 정비, 출입구 장애턱 제거 및 안내표시 완비, 공공기관 적정 배치 및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국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장애인 자가운전자 지원 강화, 특별수송서비스 도입을 세부 목표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및 복지교통 구현,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편의시설연구지원센터 설치, 공익근무요원 배치·활용, 통신·이동 및 시설 이용상 편의 제공, 주택 개조비용 보조를 세부 목표로 하는 다각적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강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기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에는 먼저 대중매체 홍보, 교육계몽 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과 TV 자막 방송 확대, 수화통역센터 설치·확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차량 확대 등을 통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공간의 확충, 문예활동 지원, 문예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여가 및 문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 국제대회 파견 강화 등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장애 관련 각종 국가행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서 ESCAP, RICAP 등의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 파견 추진, RL, RNN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장애분야별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4)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크게 장애인 재활지원체계 확립과 재활보조기구 품질 개선·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강화로 나뉘어서 추진되는데, 우선 장애인 재활지원체계 확립에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활용, 국가자격제도 도입,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전문인력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 재활프로그램의 보급·시행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명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료재활서비스 담당기관의 확충,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재활서비스의 지원 강화가 하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재활보조기구 품질 개선·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 관련 기반 정비 및 업체 지원·육성,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촉진,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활성화, 재활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구체적인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5)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은 크게 이용 및 수용시설 운영의 개선과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로 나뉘어서 추진되는데, 우선 이용 및 수용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 목표에는 지역별 균형 배치, 수용시설의 종설 및 이용시설의 확충을 내용으로 한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와 시설운영 평가 기준 작성 및 활용,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입소제도의 합리적 개선, 시설 개방화, 공동생활가정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수용시설의 운영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유형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재활프로그램의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시설 운영 개선 등이 세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 개념 정립 및 연차적 지원 확대, 생산품 개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장애인 고용·훈련 내실화, 생산품 판매 전략 개선 등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6)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범주의 확대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연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1단계 확대 범위에는 만성 신장·심장 질환, 만성 중증 정신질환, 발달장애 중 자폐장애가 포함되어 있고 2단계 확대 범위에는 만성 간질환, 만성 알코올·약물 중독, 기질성 뇌중추근 및 발달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 3단계 확대 범위에는 안면기형, 치매, 비노기계 및 피부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장애 분류 및 등급 기준 마련, 장애검진비용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 및 등록률 제고를 통한 장애 분류 및 등급의 재조정과 중앙장애판정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구체적 추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3. 장애인복지부문 5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매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당해 연도 추진 실적을 보고할 것을 계획에 명시하였으나 1998년과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기존의 국무총리 훈령에 설치 근거를 두었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11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차 회의를 2000년 12월 27일에 개최하여 1998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3년간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다. 여기에서는 당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보건복지부의 3개년 추진 실적 자료와 연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대를 참조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복지부문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 실적(1998~2001)

① 장애발생 예방

유전성 질병검사 등 산전관리 의료보험 급여 실시가 2000년 7월부터 이루어졌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115만 9천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강화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발생 건수도 1997년 28,854명에서 1999년 19,591명으로 감소하였다.

②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가 1997년 3만 3천명에서 2001년 9만 1천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1997년 4만 3천명에서 2001년 12만 6천명으로 확대되었다. 자립자금융자 대상 가구의 규모도 1997년 700가구에서 2001년 1,333가구로 커졌으며,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 확대 조치로 인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수가 1998년 980개소에서 2001년 3,594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으로서 장애인이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가 배기량에 관계없이 전차종으로 확대되었고, 의·수족 등 91개 장애인용 물품 수입시 관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전화요금 감면 대상도 2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저장애인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었다.

③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가 1997년 160개소에서 2000년 17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수도 1997년 13개소에서 2000년 15개소로 증가하였다. 휠체어, 보청기 등 11종의 재활보조기구가 의료보험(보호)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2000년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의지·보조기 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통합을 돕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수도 1997년 109개소에서 2001년 227개소로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수가 1997년 5개소에서 2001년에는 42개소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1차 의뢰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의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 시범사업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입소 장애인의 단순 수용 보호 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도 1999년부터 도입된 생활시설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문 재활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생활보조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와 장애인 보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보조원의 2교대 근무가 실시되어 2001년 195개 시설에 2,858명의 생활보조원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또한 입소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실시된 재활과정운영특별사업이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재활과정운영, 동아리활동, 중증장애인보호,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으로 확대 실시되어 2001년 현재 141개의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99)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2000)으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은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이 5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었으며, 그 수도 1997년 145개소에서 2001년에는 181개소로 증가하였다. 특히 생산품판매시설은 1997년 4개소에서 2001년에는 10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사용자 부담금의 2/9)를 재원으로 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재활센터 35개소, 직업재활시설 73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기타 3개소이다. 또한 2000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실시되어 복사용지 등 6종의 장애인 생산품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고 있다.

④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적 근거 위에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서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0~2004)'을 2000년 1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1년 4월 현재, 횡단보도 및 주요 공공시설 등 우선정비대상 시설 27만개소 중 26만개소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고, 철도·지하철 역사는 2005년 4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는 편의시설 미정비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헌장'이 1998년 12월에 제정·선포되었고, 초등학교 1, 4학년 교과과정(실험본 2권)에 장애인 인식 개선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및 특집방송이 매년 2편씩 제작·방영되고 있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가 교부되고 있고,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심부름센터가 2001년 현재 각각 24개소와 2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Windows 프로그램이 2000년에 개발·보급되었다. 정보화 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단체 등 42개 기관에서 11,800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 PC통신에 가입한 경우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⑤ 장애범주 확대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장애범주가 종전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만성심장·심장질환, 중증정신질환, 자폐증, 뇌병변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되었다.

2) 장애인복지부문 5개년 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2002~)

① 장애발생 예방

영·유아 예방 접종 및 정기검진의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수립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전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②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4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어왔던 장애아동수당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재가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4만 5천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1997년 4만 3천명에서 2002년에는 12만 8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소득세 추가 인적공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올해 안에 833개소를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수화통역사와 언어치료사 등 기존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시설별·분야별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재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시설 20개소에 1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여 치과 유닛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저

소득계층의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10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서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개선 및 관련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재활보조기연구소'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시설 확충과 함께 시설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개방화를 유도하고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설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시설의 관리운영비도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④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편의시설 설치 확충과 관련하여, 2004년까지 철도·지하철 차량에 장애인 전용좌석 설치와 열차당 1량 이상 객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화장실을 구비토록 할 계획이며, 2005년 4월까지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공공 이용시설의 신축 및 중·개축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 및 콤팩트 운행을 2004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을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대국민 캠페인 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계속해서 수록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TV프로그램의 자막방송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도 200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60,000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 및 웹사이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종합수련원'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장애인올림픽 등의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⑤ 장애범주 확대

질환별 장애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00년의 1단계 확대 시행에 2단계(간질환, 만성 약물중독, 기질성 뇌중추근 등) 및 3단계(안면기형, 치매, 비노기계 등)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4. 평가 및 제언

장애인복지부문의 경우 지난 4년간의 추진 실적을 통해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책의 질적 내실화 및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이나 추진 실적은 아직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이 여전히 저소득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 수준(월 4만 5천원, 2001년부터는 5만원)도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보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도입을 미루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장애아동부양수당만 지급대상을 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1급 계가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4만 5천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재활서비스간의 연계 미비, 재활전문인력의 부족,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등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실제 설치는 늘어나고 있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시설도 사후관리 및 연계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를 점거하는 등의 일련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듯, 그간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엔 장애인 10년'과 '아·태 장애인 10년' 등이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실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장기계획과는 다른 함의를 지닌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천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만료 시한을 불과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기구로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그 이전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여성 등 여러 민간단체를 대표할 만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 부처 및 장애관련 민간단체의 중견실무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실공히 장애인복지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로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예산과 인력 등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1997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과 고용부문의 경우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이 예측되어 있어 계획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복지부문의 경우에는 소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발전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성과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5개년 계획의 수립시에는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항목별 소요 예산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촉구하고 싶다. 1997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만료 시한을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차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계획안 수립과 관련한 가시적인 일정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만이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일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장애인복지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명과 가시적 일정의 제시를 기대해 본다.

표 1. 장애인복지부문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¹⁾

세부 계획	내용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장애 발생 예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태아 및 신생아 관리체계 확립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제도화 학교보건관리 강화 - 교통안전 및 장애 예방 지식의 교과과정 반영, 학교정기검진 강화, 초등학교 입학시 모자보건수첩 제출 의무화(학교보건법 등 개정) 성인병·노년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 응급진 문헌력 양성 교통안전대책 -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교통사고 관련 홍보영화 제작·보급, 교통안전의식 홍보 응급구조체계개선 - 응급구조 의료체계의 조직화(신고전화 연결체계 및 관련 정보망 구축)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노동부 산업안전 3개년 계획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성 질병검사 등 산전관리 의료보험 급여 실시(2000. 7.) 선진형 대상 이상검사 무료 실시 - (1998~2000. 9.) 1,159명, (2001) 2중, 38만명 미숙아 등록 및 치료비 지원: 510명(2001) 노년성 지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 확충: 54개소(2001) 응급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1999.2) 산업재해 장애 발생 감소: 28,854명(1997) → 19,991명(1999)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의료보험 적용 추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지속 추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전문센터 지정·운영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0~2004) 적극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및 각종 수당제도 도입 자립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및 급여내용 보완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수립 서체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소득세 인적 공제범위 확대, 중증장애인 중역세 감면, 장애인 차량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2,000cc까지)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대상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3만 3천명(1997) → 9만 1천명(2001) 자립자금융자 대상 확대: 700가구(1997) → 1,333가구(2001)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확대: 4만 3천명(1997) → 12만 6천명(2001) 1.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배기량 제한 폐지) 2. 관세감면 장애인용 골품 확대: 의·수족 등 91품목 3. 부가가치세 면제 보장구 확대: 6 → 12품목 4. 전화요금 감면 확대: 2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 전체 장애인 6.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배우자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998. 6.) * 공공시설대 미결·자관이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제 확대: 980개소(1998) → 3,594개소(20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장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2002) - 월 4만 5천원 → 월 5만원 / 11만명 장애 아동을 위한 지급(2002)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재가아동의 보호자 - 지급액: 월 4만 5천원 / 2,089명 보호수당 지급 추진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확대: 12만 8천명(2002) 소득세 추가 인적공제 확대 추진 * 공공시설대 미결·자관이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제 확대: 833개소 추가로 허가(20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보도) 정비 출입구 장애턱 제거 및 안내표시 완비 공공기관 적정매치 편의시설 설치 국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및 복지교통 구현 -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장애인 자가 운전자 지원 강화, 특별수송서비스 도입 다각적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강구 -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편의시설 연구지원센터 설치, 공익근무 요원 매치·활용, 통신·이동 및 시설 이용상 편의 제공, 주택개조비용 보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확단보도 및 주요공공시설 등 우선정비대상 시설 중 27만개 중 26만개 설치 완료(2001. 4.) 편의시설 미정비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2001. 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1998.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 및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 설치(2005. 4월까지) 월드·지하철 차량에 장애인 전용좌석 설치, 열차당 1량 이상 좌자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화장실 구비(2004) 민간 공동 이용시설의 건축, 중·개축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리프트 장차 순환버스 및 콜택시 운행(2004년까지 연구 50만 이상 시로 확대)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을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 편의시설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방송 실시

표 1. 계속

세부 계획	내용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매체 홍보, 교육계몽 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내용 반영, 기업체 연수과정에 장애인 관련내용 포함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동역센터 및 심부름센터 설치 확대, TV자막 확대 여가 및 문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의 확충, 문예활동 지원, 문예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 국제대회 파견 강화 장애 관련 각종 국제행사와의 적극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CAP, RICAP 등의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 파견, RI, RNN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권헌장'선포(1998. 12.) 초등학교 1,4학년 교과과정 (설립본 2권)에 인식 개선 내용 수록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및 독립방송 제작·방영 매년 2편 저소득 장애인에게 음성은목시계, TV자막수신기 교부 수화동역센터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운영: 24개소 / 26개소(2001) 장애인용 공공전화부스(3,569기) 설치 및 경자 전화번호부 보급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장애인단체 등 42개 기관, 11,800명 PC통신 가입비 면제 및 기본이용료 50% 감면 국립도서관 등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실천운동의 지속적 전개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TV자막방송 비율의 연차적 확대 추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2002년까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60,000명(200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 및 웹사이트 개발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추진(2002~2008)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 선수 연금지급액을 일반선수 연금액의 2/3수준으로 인상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재활지원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활용, 국가자격제도 도입, 근무여건 개선 -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의료재활서비스 담당기관 확충,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재활보조기구 품질 개선·보급 및 관련기술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보조기구 관련 기반 정비 및 업체 지원·육성,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촉진,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확대: 160개소(1997) → 171개소(2000) 장애인복지시설 부설 재활병·의원 확충: 13개소(1997) → 15개소(2000) 휠체어, 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 의료보험(보호) 실시: 11종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자격제도' 시행(2000)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제정(20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동역사, 언어치료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분야별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20개소/1개소당 20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00명/1인당 2000만원 의료재활 관련 의료보험 급여수준의 연차적 상향 조정 '재활보조기구연구소'설치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및 수용시설의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균형 배치, 수용시설의 중설 및 이용시설의 확충 - 시설운영 평가 기준 작성 및 활용, 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 시설임대제도의 합리적 개선, 시설 개방화, 공동생활가정 설치 확대 -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유형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재활프로그램의 표준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작업장 개념 정립 및 연차적 지원 확대, 생산성 제고 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통한 고용·훈련의 내실화, 생산품 판매 전략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109개소(1997) → 227개소(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운영 확대: 5개소(1997) → 42개소(2001)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의료사업 운영사업 실시(2000~2002)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1999~) 장애인생활시설 생활보조원 2교대 근무 실시(2001)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실시(199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145개소(1997) → 181개소(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2000. 10. ~)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실시(2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개방화 유도 및 투명성 확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 시설 종사자의 지속적 처우 개선 시설 관리운영비의 인상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장애인 법주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법주의 단계적 확대: 1차, 2차, 3차의 단계적 확대 장애인분류 및 등급 재조정 중앙장애관정위원회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법주가 종전 5종에서 10종으로 1차 확대(2000.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만성 호흡기·간질환, 기질성 뇌중추근 등) 및 3단계(뇌기능 및 피부질환, 안면기형, 치매 등)의 확대

주: 1) 각 부분별 세부 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 번호가 같은 것이 해당 세부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임. 또한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에 담기된 사업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동일한 번호가 없는 것은 해당 사업의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임.